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어기구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4727

발의연월일: 2022. 2. 10.

발 의 자:어기구·이병훈·박 정

김주영ㆍ허종식ㆍ박상혁

홍영표 • 윤준병 • 김정호

송갑석 의원(10인)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시숲 등(도시숲·생활숲·가로수를 말함. 이하 같음)의체계적 조성과 생태적 관리를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강화하고,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사업에 민간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20년에 제정되었고 1년 후인 202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음.

도시숲 등은 미세먼지 저감 및 폭염 완화뿐만 아니라 탄소흡수원으로 서의 기능도 수행할 수 있는데 현행법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누락되어 있음. 또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주체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 행정 일선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음.

이에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는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온실가스 배출 감축의무가 있는 기업 등의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참여를 촉진하고, 도시숲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 주체를 명확히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가 탄소흡수원으로서 기능을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이바지할 수 있음을 이 법 제정 목적에 추가적으로 명시함(안 제1조).
- 나. 광역시의 군수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계획의 수립·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해당 군 역시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를 두지 않을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13조제1항).
- 다. 도시숲지원센터의 사업 수행 범위에 산림청장이 설정하는 도시숲 등 관리지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를 추가함(안 제16조제2항제1호).
- 라. 모범 도시숲 등의 인증기준·절차 및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관한 사항 이외에 인증의 유효기간·취소에 관한 사항을 농림 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8조제4항).
- 마. 산림청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 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효과를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탄소흡수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 신설).
- 바.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관련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이를 방해하는 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기존 500만 원 이하에서 합리적인 수준인 150만원 이하로 인하함(안 제28조).

법률 제 호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원 조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한다.

제6조제1항 단서 중 "도지사 및 구청장"을 "도지사, 구청장 및 광역시의 군수"로 한다.

제1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도와 구(자치구를 말한다)의"를 "지방자치단체 중 도, 구 및 광역시의 군의"로 한다.

제16조제2항제1호 중 "운영"을 "운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도시숲 등의 측정·평가"로 한다.

제18조제4항 중 "기준 및 절차,"를 "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취소와" 로 한다.

제5장에 제2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청장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효과 등을 고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

로 인정할 수 있다.

제28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 항)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한다.

- ①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기피하 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시숲 등의	제1조(목적)
조성・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	
하여 국민의 보건ㆍ휴양 증진	
및 정서 함양에 기여하고, 미세	
먼지 <u>저감 및 폭염 완화 등으</u>	저감, 폭염 완화 등으로 생
로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등 국	활환경을 개선하며 탄소흡수원
<u>민의 삶의 질 향상</u> 에 이바지함	조성을 통하여 탄소중립을 실현
을 목적으로 한다.	하는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제6조(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의 수립 등) ① 지방자치단체	의 수립 등) ①
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10년	
마다 관할 지역에 대한 도시숲	
등 조성·관리계획(이하"조성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	
자치단체의 장 중 도지사 및	도지사, 구청장
<u>구청장</u> 의 경우에는 수립·시행	<u>및 광역시의 군수</u>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제13조(도시숲등의 조성·관리
심의위원회) ① 도시숲등의 조	심의위원회) ①
성・관리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도시숲등의 조 성·관리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를 둔 다. 다만, 도와 구(자치구를 말 한다)의 경우에는 위원회를 두 지 아니할 수 있다.

- 1. ~ 3. (생략)
- ② ~ ⑤ (생 략)
-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등) ① (생 략)
 - ② 도시숲지원센터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제11조제4항에 따른 도시숲
 등 관리지표의 <u>운영</u>
 - 2. ~ 7. (생략)
 - ③ ④ (생 략)
-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ㅈ ~ ③ (생 략)
 - ④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인증 기준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지정취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u>지방자치단체 중 도,</u>
<u>구 및 광역시의 군의</u>
1. ~ 3.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도시숲지원센터의 지정·
운영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1
운영과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도시숲등의 측
 정·평가
 2. ~ 7. (현행과 같음)
③·④ (현행과 같음)
제18조(모범 도시숲등의 인증) ①
~ ③ (현행과 같음)
4
<u>기준·절차·유효기간 및 취</u>
 소와
· 제25조의2(탄소흡수원 인정) 산림
<u> </u>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 하여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를 부과한다.

- 1.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 는 제거 명령을 이행하지 아 니한 자
- 2.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ㆍ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 <신 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 시·도지사 또는 시 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

청장장은 이 법에 따라 조성・ 관리되는 도시숲등에 대하여 탄소흡수 기능・효과 등을 고 려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탄소흡수원으로 인 정할 수 있다.

제2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 제28조(과태료) ① 제22조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제거명령을 이 행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 ② 제24조제1항에 따른 보고 • 자료제출 또는 검사를 거부・ 기피하거나 방해한 자에게는 1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한다.

<u>3</u>	제1항	및	제2항	

수한다.	